

초안

요약본

뉴욕시 헌장에 대한  
개정 제안

August 20, 2010

New York City Charter Revision Commission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  
2 Lafayette Street, 14<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 요약본

Michael R. Bloomberg 시장이 2010년 현장 개정 위원회를 설치한 직후, 현장 개정 위원회는 각 자치구(borough)에서 개최된 초기 5개 공청회에서 대중, 정부 관리 및 지역사회 단체들이 제출한 증언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분석에 근거해 현장 개정 위원회는 5월 10일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개 영역을 광범위하게 탐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임기 제한, 투표 참여, 공공 신뢰, 정부 구조 및 토지 사용. 그 후에, 현장 개정 위원회는 5개 주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발표 및 추가적인 대중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위원회의 직원들은 그 다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에서 고려하기 위한 추천 사항이 포함된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각 자치구에서 다시 최종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기 추천 사항에 대한 대중의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8월 11일 회의를 열고 11월 선거에서 10개 개정 제안에 대해 투표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임기 제한

2008년에 현지 법규에 의해 개정되고 개정 위원회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현행 현장 조항에 따르면, 현재 시의원들 및 기타 선출된 공무원들은 4년 임기를 연속해서 3번까지 역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993년에 유권자 발의로 제정된 법률로 인해 선출된 공무원들이 4년 임기를 2번까지만 역임하도록 제한된 바 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유권자들이 2번 임기 제한과 3번 임기 제한 사이에서 선택을 하여 선출된 시 공무원들의 현행 3회 연속 임기 제한을 2회 연속 임기 제한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개정 제안을 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개정 제안은 재직중인 선출 공무원들의 임기 제한을 시의회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며; 제안된 2번 임기 제한으로의 변경은 2013년 11월 5일 이후에 처음으로 공직에 선출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 청원서에 필요한 서명 요건의 감소

지난 시장 선거 투표에 단지 26%의 등록된 뉴욕 주민들이 참여한 바와 같이 뉴욕시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 수는 극적으로 낮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조항들을 탐구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조항들은 주정부 법이나 주정부 헌법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뉴욕시 관할 지역 내에서 법률화 될 수 있는 일부 조치들을 단지 뉴욕시 선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뉴욕시 선거가 뉴욕주 선거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되므로, 서로 다른 투표 요건은 잠재적으로 대규모의 투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위원회는 뉴욕시 선거 입후보자들이 감소된 청원서 서명자 수로 입후보자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주정부 법 하에서 허용되는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 제안은 시장, 감사관 및 공익 대변인 선출 정당 예선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서명자 수를 7,500 에서 3,750 으로; 자치구장 (Borough President) 선출 정당 예선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서명자 수를 4,000 에서 2,000 으로; 시의원 선출 정당 예선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서명자 수를 900 에서 450 으로, 또는 독립 입후보자 선출 본선 입후보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서명자 수를 2,700 으로 감소시킵니다.

## 유권자 지원 위원회(VAC)와 유세 재정 위원회(CFB)의 통합 및 유세 재정 위원회 회원의 임기 변경

개정 위원회는 유권자 지원 위원회와 유세 재정 위원회(현재 단독 운영 단체)를 통합하여; 회원 구성을 개조하고; 명칭을 "유권자 지원 자문 위원회"로 변경하고; 두 위원회가 담당하던 일부 행정 기능 및 책임에 대한 재정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지원 위원회의 영향력은 유세 재정 위원회의 훌륭히 정착되고 관리되는 체제를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지원 위원회는 이미 유세 재정 위원회와 함께 투표자 안내서 및 투표자 안내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세 재정 위원회는 유권자 지원 코디네이터를 임명할 것이며 유권자 지원 위원회의 자문과 보조를 통해 현재 현장에 있는 유권자 지원 기능 수행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 개정 제안은 또한 유세 재정 위원회 회원들의 근무 개시 일자를 4 월 1 일에서 1 월 1 일로 앞당길 것입니다.

## 독립 유세 기부금 공개 요건

근래에 와서, 점차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입후보자와 제후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독립적 자금 지출이 뉴욕시 선거 관련 지출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위원회는 대중에게 이러한 지출액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된 시정부 직책 입후보자와 관련해 금전을 지출하거나 기부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광범한 공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입후보자와 독립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지출액의 공개를 요구하도록 뉴욕시의 유명한 선거 자금 규제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정 제안은 정보의 공개에만 관련되며 입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기부금 및 지출액 제한을 설정하지 않음.) 개정 위원회의 제안은 특정 입후보자 또는 주민 투표 제의자와 독립적으로 입후보자 또는 주민 투표를 지지하기 위해 \$1000 이상 금액을 지출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지출액을 유세 재정 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이와 유사하게 \$5,000 이상을 기부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경비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문헌이나 광고는 경비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 제 68 장 개정, 이해 상충

이 개정 제안은 시정부 직원들의 석명 의무를 증대하고 부패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장에 대한 2 개 개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개정 위원회는 시정부의 이해상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증가하고, 시정부 직원들에 대한 의무적 훈련을 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처벌 제안은 단일 이해상충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000 에서 최대 \$25,000 로 증가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현행 벌금 명세표는 1988 년 이래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갱신되거나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처벌 제안은 이해 상충 관리 위원회("COIB")가 좀더 유연성을 가지고 벌금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해상충법의 금지 사항들에 관한 상대적 중요성을 알려 줄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은 모든 이해 상충 위반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반환 요구 권한을 부여합니다. 개정 위원회는 상기 2 개 조항이 이해 상충 위반에 대해 억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위원회는 모든 시정부 직원들이 근무 개시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시정부의 이해상충 조항에 대해 훈련을 받도록 명령하는 개정 제안을 제공합니다. 이해상충 관리 위원회는 그 동안 조직적으로 시정부 직원들을 훈련시켜 왔지만, 이 개정 제안은 모든 직원들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훈련 제공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훈련은 개인적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행정 법정의 통합

행정적 위반에 대한 판결은 현재 12개 이상의 별개의 법정에서 다양한 절차 하에 그리고 다양하게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법 판사들에 의해 실행됩니다. 이 개정 제안은 법정들에 대한 행정적 통합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을 간소화하고 절차적 표준을 설정합니다. 현재 많은 재판 청문회들이 규제 기관 조직 내에서 개최되며, 이러한 기관들이 공정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개정 제안은 2005년 헌장 제안에서 기인되었으며 주 법정 판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반영하는 행정법 판사들의 행동 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 제안은 시장에게 다양한 법정들의 재판 기능을 단일 법정 또는 기관에 양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에게 통합에 관해 평가하고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행정 재판 청문회 사무국에 행정법 판사의 임명을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의 명령 및 지시가 유효하기 전에 통보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 제안은 소비자 보호국에 자체가 집행하는 법의 위반에 대해 공정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국의 재판 기능에 대한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면허 단체들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소비자 보호법 위반은 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보고 요건 및 자문 기관들에 대한 검토

개정 위원회는 175개 이상의 보고서 및 헌장에 확립된 자문 기관들에 대해 그러한 보고서 및 자문 기관이 유용한지 또는 불필요한지 그리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서들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긴축 재정 하에서 정부 기관의 시간 및 자원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제안은 보고서 및 자문 기관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시장의 운영 부장이 회장을 담당하고 또한 시의회 대표 및 시의회 대표가 선택한 2명의 다른 의원, 법률 자문관, 예산 관리국 국장 및 정보 기술 통신국 국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개정 제안은 또한 보고서 및 자문 기관에 관한 위원회가 재판을 의뢰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를 무시하거나, 위원회가 검토하게 되어 있는 요건이나 자문 기관을 해산하기 전에, 이러한 보고서 및 자문 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단체들과 회사들에 통보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입법은 보고서 및 자문 기관에 관한 위원회가 보고 요건 또는 자문 기관을 검토할 때 고려할 요인들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 개정 제안은 또한 위원회가 새로운 보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기 전에 3년의 대기 기간을 갖도록 강요하며; 시의회의 보고 요건 또는 자문 기관을 철회, 제한, 연장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공정 분배**

뉴욕시의 공정 분배법은 지역사회 내 시정부 시설의 부담 및 혜택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하에 확립되었습니다. 보다 투명한 "공정 분배" 결정을 위해, 개정 위원회는 현장의 204(d) 조항을 개정하여 도시계획국이 발행하는 지도 및 설명서가 주와 연방 교통 시설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장소를 비롯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동반 역할을 하는 민간 교통 시설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장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 **장래를 위한 고려 사항**

개정 위원회는 투표에 회부하는 질문들에 추가해서 선거법 개정, 공공 신뢰 및 정부 구조와 관련된 기타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더 연구하도록 권장합니다.